

『新註無冤錄』과 조선전기의 檢屍

金 濤*

목 차

- I. 머리말
- II. 『新註無冤錄』의 간행과 구성
 - 1. 『新註無冤錄』의 간행
 - 2. 『新註無冤錄』의 구성
- III. 『新註無冤錄』의 檢屍 방법
 - 1. 시체 관찰과 顏色
 - 2. 偽造된 傷痕의 判別
 - 3. 정확하고 표준화된 檢屍
- IV. 현장 檢屍 절차와 보고 과정
 - 1. 현장 檢屍 절차
 - 2. 「檢屍狀式」의 활용
 - 3. 檢屍 후 보고 절차
- V.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초기의 살인 사건 조사 과정에는 다음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었다. 첫째, 검사와 살인사건을 조사해야 할 해당관리들이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또한 검시도 직접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둘째, 검시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범인을 확정하는데 과학적인 방법과 엄밀한 심문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고문을 가해 자백을 받아낸다는

* 서울大學校 奎章閣 책임연구원.

것이다.

이미 살인사건의 검시절차와 방법들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던 『無冤錄』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無冤錄』이 검시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지 못한 이유는 책의 독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검시현장에서 사용해야 하는 공문서식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던 사정도 있었다.

우선 세종은 『無冤錄』의 독해를 돕는 주석을 달도록 요구하였다. 1438년 최치운 등에 의해 새로운 『新註無冤錄』이 완성되자 이듬해 1439년 강원도에서 인쇄하여 검시 지침서로 활용하였다. 동시에 「檢屍帳式」이라는 공문서 서식을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도록 명하였다. 『新註無冤錄』이 일종의 검시 지침서라면 〈검시장식〉은 실제 검시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사체의 손상부위 등을 직접 기록하는 공문서였다. 『無冤錄』에 근거하여 검시절차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문서 양식이었다.

한편 『新註無冤錄』에는 일련의 검시과정 후 조사 전 과정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기록한 「初復檢驗關文式」이 수록되어 있다. 元代 검시 제도가 이룩한 또 하나의 성과 중 하나인 「관문식」은 검시 절차에 따라 일일이 보고토록 규정한 공문서 양식으로 조선초기에도 검시는 바로 이 「관문식」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관문식」을 통해 조선초기의 검시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1단계는 검시를 위해 출발하는 과정이다. 출발일시, 함께 검험하는 서리와 오작인의 성명, 시체가 놓여 있는 장소, 거리 등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2단계는 시체가 놓인 마을에 도착하여 사건 관련자들을 마을의 주부와 里正 등으로 하여금 모두 소집하도록 하고 이들의 신상을 기록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검험을 시작하고 「檢屍帳式」에 하나하나 사체의 상태를 기록한 후 검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명을 받아두는 단계이다.

마지막 과정은 검시한 결과에 근거하여 시체의 사망 원인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시체의 검험결과를 토대로 死因을 정하고 이를 시친에게 준 후 복검이나 三檢 혹은 四檢 등의 검시에 대비하여 里正 등에게 시체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다음 조사관에게 사건 관련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다.

『新註無冤錄』은 조선 초기 간행되어 영·정조대에 이르기까지 조선 법의학의 기본 지침서로 활용되었다. 검시의 구체적인 절차, 검시과정의 엄밀성과 주의 사항등에 대한 행정절차상의 규칙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사망한 시체의 검시방법을 당시까지 축적된 과학적 지식을 수록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新註無冤錄』에서 마련된 「관문식」이 조선후기까지 거의 변함없이 준수되었다는 점과 『新註無冤錄』의 과학적인 법의학 지식에 대해서 조선후기까지 별다른 異見이 없었다는 점을 안다면 그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無冤錄』, 『新註無冤錄』, 檢屍, 최치운, 세종, 關門式, 檢屍狀式

I . 머리말

歷史 이래 인간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어 죽음에 이르는 일이 빈번했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살펴 본 조선시대의 살인사건은 상당수에 이르며 그 방법과 원인 역시 매우 다양하다. 타살이든 자살이든 인명사건은 고금을 막론하고 중대한 일이었으므로 죽음의 원인과 범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물론 현실에서 이러한 법률과 규칙이 모두 지켜진 것은 아니어서, 조선초기에도 살인사건의 발생과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첫째, 검사와 살인사건을 조사해야 할 해당관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거나 검사를 직접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건 현장의 참혹함과 시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직접 검험을 시행해야 할 관리들이 아전이나 作人(수령이나 검험관 등이 검시할 때, 이를 보조하면서 직접 시체를 만지던 사람)과 같은 아래 사람에게 검시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1432년 세종은 형조에 전지하면서, 시체를 검안하는 일은 사람의 죽고 사는 일이 달린 일인데도 중앙이나 지방의 관리 중에 친히 檢屍하지 않고 아전에게 맡기는 일이 많다면서 친히 검시하도록 주지시켰다.¹⁾

둘째, 검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에서는 5부와 한성부 혹은 형조의 郎官과 형조 소속의 의원이 검시하고, 지방의 경우에도 수령과 醫生들이 출동하여 친히 검시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²⁾ 그러나 여전히 中外의 관리들이 검시를 회피하는데다가 검시의 규식조차 충분하지 않아 疑獄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³⁾ 『新註無冤錄』 간행 이전의 폐단을 지적하는 형조의 公文에도 서울에서는 한성부와 各部 관리가 검시를 하는데 비해 외지에서는 그 고을의 三班首吏가 初檢하고 守令이 復檢을 하는 등 일정한 체계를 결여하고 있었던 당

1) 『世宗實錄』 卷55 세종14년 2월 16일(을사).

2) 『世宗實錄』 卷65 세종16년 8월 25일(기사).

3) 『世宗實錄』 卷68 세종17년 6월 8일(무신).

시의 상황이 잘 드러난다.⁴⁾

셋째, 범인을 확정하는데 과학적인 방법과 엄밀한 심문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고문을 가해 자백을 받아낸다는 것이다. 범인을 빨리 확정하려고 관리들이 필요 이상의 고문을 가하고 죄수들을 오랫동안 구류하여 도리어 목숨을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⁵⁾ 법규와 달리 현실에서는 범인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검사를 통한 수사와 심문보다는 주로 拷訊이라는 고문에 의한 자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人命사건의 경우,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엄격하고 정밀한 조사방법과 함께 범인으로 확정되면 사형에 처해지는 重刑을 피하기 어려웠으므로 신중한 심리절차 또한 필요하였다.

II. 『新註無冤錄』의 간행과 구성

1. 『新註無冤錄』의 간행

고려시대에 이미 1059년 중국에서 간행된 법의학 참고서 『疑獄集』 등이 출판되었던 사실⁶⁾로 보아 宋代의 『洗冤錄』, 『平冤錄』, 『結案程式』과 같은 법의학 서적도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고려 말에 元의 『至正條格』 등이 적용된 사례들이 있어 동시기에 간행된 『無冤錄』 역시 수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⁷⁾ 뿐만 아니라 조선에 들어와서도 1418년(태종18) 『疑獄集』이 간행되었으며, 1384년 明에서 간행된 중간본 『無冤錄』이 수입되어 검시 현장에서 사용되었을 것으

4) 『世宗實錄』 卷95 세종24년 2월 27일(무오).

5) 『世宗實錄』 卷50 세종12년 10월 28일(을미).

6)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13년 5월, ‘甲戌 安西都護府使都官員外郎異善貞等 進新雕肘後方七十三板 疑獄集一十一板 川玉集一十板 知京山府事殿中內給事李成美 進新雕隋書六百八十板 詔置秘閣’.

7) 박병호, 『세종시대의 법률』(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6), 58~62면.

로 짐작되지만⁸⁾ 여전히 검시과정의 표준 지침서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중국의 법의서들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용어의 생소함은 가장 큰 장애였다.

원래 중국 元나라 王與(1261~1346)⁹⁾의 저작인 『無冤錄』은 1308년 혹은 1335년에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¹⁰⁾ 그 후 중국을 비롯하여 조선, 일본 등지에 전해지면서 법의학의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었다.¹¹⁾ 왕여는 기왕의 법의학서인 『세원록』과 『평원록』 그리고 원대 다양한 판례들을 참고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獄事를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옥사를 결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獄事가 사람의

- 8) 『無冤錄』은 1384년(명 洪武17)에 중간된 적이 있는데 조선에는 바로 이 책이 수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新註無冤錄』의 이본들을 대조한 결과 이 明本과 일치하였다(楊奉琨, 「王與生平及無冤錄成書年代問題考辨」, 『無冤錄校注』(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 9) 왕여는 字가 與之이며 溫州 사람이었다. 그는 東漢의 처사 王霸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버지 王勝에 이르러 관직이 樞密承旨가 되면서 거족이 되었다. 왕여는 어려서부터 뜻이 크고 학문에 힘을 쏟아 주야로 독서하였으며 특히 법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원나라에 의해 통일제국이 이룩된 후 처음에 과거시험이 없어 관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吏職부터 시작해야했는데, 왕여는 劉牧의 추천으로 처음에 溫州郡의 실무관료인 功曹가 되었다. 근민하였던 왕여는 특히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어 죽을 때 이들을 살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 곧 杭州路 鹽官州 提控案牘이 되었다. 이후 江浙行省 理問所提控, 處州路 總管知事가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獄事를 명쾌하게 치결하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承宣朗 溫州路 樂清縣尹을 역임하고 치사한 후 산림에 은거하였다. 그의 저작으로는 無冤錄 이외에 『欽恤集』, 『禮防書』, 『刑名通義』 등이 있다(楊奉琨, 「王與生平及無冤錄成書年代問題考辨」, 『無冤錄校注』(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참조.
- 10) 왕여의 자찬 序文 마지막의 ‘是編亦奚以爲 至大改元長至日 東甌 王與書于儒志山舍’의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다. 먼저 ① ‘是編亦奚以爲 至大改元長至日’로 끊어 읽으면, 책이 쓰여진 해가 지대(至大) 원년, 즉 1308년이 된다. 그러나 ② ‘是編亦奚以爲至大, 改元長至日’로 끊어 읽으면, 改元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元의 연호가운데 改元이 없다는 사실이다. 혹자의 주장대로 改元이 元 順帝의 연호인 至元의 誤字임이 분명하다면, 至元 원년 즉 1335년에 쓰여졌다고도 볼 수 있다(楊奉琨, 「王與生平及無冤錄成書年代問題考辨」, 『無冤錄校注』(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그러나 필자는 원문에 따라 至大年間に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 11)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大阪富士精版印刷, 1963) 참조.

생명에 관계된 경우에는 檢屍가 가장 어려운 일이 되니 조그만 차이에 사람의 生死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검험이 명확하지 못하면 비록 治獄, 斷獄을 잘하는 자일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옛적에 宋惠父가 獄情의 잘못이 그릇된 검험의 관정에서 말미암는 것을 염려하여, 『洗冤錄』을 엮었으며, 趙逸齋가 다시 『平冤錄』을 考訂하였다. …(중략)… 내가 외람되게 案牘의 소임을 맡게 되어 역대의 初檢과 제검의 어려움을 두로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세원록』과 『평원록』 두 가지를 보았더니 서로 損益이 있었다. 드디어 省部에서 내려보낸 程式을 지키고 따라야 할 근본으로 삼고 異同을 참고하여 종류별로 나누어 이 책을 편찬하였다.¹²⁾

『無冤錄』이 간행된 지 100여 년이 지난 1435년(세종17) 조선의 조정에서도 법의학 지침서로 『無冤錄』의 활용이 거론되었다. 檢屍하는 格例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吏科·律科의 시험 과목으로 정하고 朝士들도 이를 익히게 하여 검험에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독해가 까다롭고 조선과 다른 중국의 제도에 기초하였다는 현실이 책의 활용에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은 『無冤錄』의 朝鮮版 간행과 주석 작업을 명하게 되었다. 유의손이 쓴 『新註無冤錄』의 서문에는 저간의 사정이 잘 드러나 있다.

가) 옛날에 원나라의 동구 땅의 왕씨가 『세원록』과 『평원록』을 참조하여 잇개 『무원록』을 편찬하고 세상에 전하였으니 천하에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글이 너무 어렵고 뜻이 깊어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 檢覆을 밝히기 어려워서 疑獄이 아직도 많으니 참으로 한스러운 일이다.¹³⁾

나) 우리 주상 전하[역자 註 : 세종]께서 好生の 덕으로 不忍之政을 펼치시면서 혹시나 백성이 억울하게 되거나 앓을까 진념하시어 이조참의 최치운·판승문·원사 이세형·예문관직제학 변효문·승문원교리 김항 등에게 帙註를 달도록 명을 내리시었다.¹⁴⁾

12) 『新註無冤錄』, 「序」(王興 撰).

13) 『新註無冤錄』, 「序」

元朝東甌王氏 增損洗冤·平冤二錄 編輯是書 以傳于世 蓋欲使天下無冤民也 然文頗艱深 人未能盡解 以致檢覆難明 疑獄尙繁 良可歎已

다) 이에 책의 내용을 살피고 다른 책들을 널리 詳考하여 사례는 그 원류를 캐고 글자는 근원을 연구하여 자세히 주석을 가하고 아울러 음훈을 붙였다.¹⁵⁾

라) 편찬을 마치어 임금에게 올리니 版本에 새겨 널리 퍼라 하시고 또 신에게 책머리에 서문을 쓰라고 하셨다. …(중략)… 우리 조선 億萬世에 백성의 생명을 살리고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이 책에 힘입는 바가 있을 것이다. 1438년(正統 3) 11월 유의손이 서문을 쓰다.¹⁶⁾

가)는 바로 『新註無冤錄』 간행 이전의 상황을 설명한다. 비록 『無冤錄』이 전래되어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이 서술되어 있다. 이에 세종은 최치운¹⁷⁾을 중심으로 여러 신하들에게 ‘음주’를 달도록 요구하였다. 최치운 등은 『無冤錄』 뿐만 아니라 다른 참고서들도 고찰하여 주석을 달고 음훈을 병기하여 『新註無冤錄』을 완성한 것이다. 다른 참고서란 『세원록』, 『평원록』 등으로 최치운 등은 명에서 1384년 간행된 『無冤錄』 重刊本을 저본으로 하고¹⁸⁾ 『세원록』과 『평원록』 등을 직접 참고하여¹⁹⁾ 보다 완벽한 新註本 『無冤

14) 『新註無冤錄』, 「序」

恭惟我主上殿下 以好生之德 行不忍之政 軫念赤子或陷于非辜 乃命吏曹參議臣崔致雲 · 判承文院事臣李世衡 · 藝文館直提學臣卞孝文 · 承文院校理臣金滉等 俾着音註(中略)

15) 『新註無冤錄』, 「序」

於是 參授本文 搏考他書 事窮波源 字究窠穴 詳加註釋 并附音訓(中略)

16) 『新註無冤錄』, 「序」

今乃徹編以進 遂令鍍梓廣布 仍命臣序其卷端 (中略) 我朝鮮億萬世活民命而壽國脈者 必將有賴於斯焉 正統三年 十一月日 中訓大夫集賢殿直提學知製教經筵侍讀官 臣 柳義孫 奉教序

17) 『新註無冤錄』 간행을 대표하는 조선의 학자는 최치운(1390(공양왕 2)~1440(세종 22))이었다. 본관은 江陵이고 자는 伯卿, 호는 鏡湖 · 釣隱 등이다. 1408년(태종 8) 司馬試에 합격하고, 1417년 식년문과에 급제, 승문원에 등용된 뒤 집현전에 들어갔다. 1433년(세종15) 經歷이 되어 평안도도절제사 崔潤德의 從事官으로 야인정벌에 공을 세우고 돌아와 知承文院事가 되었다. 이어 判承文院事가 되고, 공조참의와 이조참의를 거쳐 좌승지를 지냈으며 1439년 공조참판으로 啓稟使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범찰 · 동창 등의 야인들이 양민으로 경성지역에 영주할 수 있도록 요청 이를 관철시켰다. 특히 法理에 밝았다고 전해진다. 『臨瀛世稿』(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도서번호 <奎 4529> 참조.

錄』을 1438년(세종20) 겨울(11월)에 완성하였던 것이다.

세종은 이듬해인 1439년 봄 강원도 관찰사 兪孝通에게 『新註無冤錄』을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하도록 명하였다.²⁰⁾ 문과출신이나 의학에 정통하였던 兪孝通은 이미 『鄉藥採取月令』, 『鄉藥集成方』과 같은 거질의 의서 편찬에 참여한 경력이 있었다. 兪孝通의 이러한 경력이 법의학서인 『新註無冤錄』을 그의 부임지인 강원도에서 간행하도록 한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의서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만큼 인쇄에 매우 신중했으며 반드시 의학에 밝은 사람이 주관했던 사정이 깔려 있는 것이다.

강원도 관찰사 兪孝通은 곧바로 장인들을 뽑고 재목을 모아 원주에서 『新註無冤錄』 인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당시가 봄철이었던 만큼 일손이 비쁜 농번기라는 이유로 잠시 간행 작업이 미루어졌다. 이윽고 여름철이 되어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할 즈음에 兪孝通은 강원도관찰사에서 집현전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대신 강원도 관찰사로 집현전에 근무하던 최만리가 부임하였다.²¹⁾ 간행 작업은 최만리의 일이 되었고 1439년 가을부터 최만리는 『新註無冤錄』 간행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440년 봄 드디어 『新註無冤錄』 초간본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원주에서 간행된 『新註無冤錄』이 전국으로 보급되어 활용되는 데는 강원도라는 지역이 장애로 작용했다. 때문에 『新註無冤錄』은 필요에 따라 각지에서 인쇄되었다.²²⁾ 1447년 경상도 경주에서 重刊되었으며, 진주·남원·원주 등지에서

18) 楊奉焜, 「王與生平及無冤錄成書年代問題考辨」, 『無冤錄校注』(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19) 최치운 등이 가한 新註에는 ‘洗冤錄無看屍二字’와 같이 직접 『세원록』의 원문과 대조하여 오·탈자를 교열한 흔적이 보인다.

20) 『新註無冤錄』, 「跋文」(서울대학교 규장각 <奎 2216> 본 참조), 1440년(세종22)에 강원도 관찰사 최만리가 쓴 발문에는 간행 이후의 사정이 소개되어 있다.

21) 『세종실록』 권85 세종21년 6월 29일(을사), 이날 兪孝通을 집현전 부제학으로, 崔萬理를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는 내용이 전한다.

22) 현존하는 『新註無冤錄』은 모두 4종으로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다. 각각을 살펴 보면 1447년 경주에서 간행된 ① <奎12120>, ② <奎12382> 본, 그리고 1506년 이후 간행본인 ③ <古5130-5> 본, 간행년대 미상의 ④ <奎26660> 본과 ⑤ <奎2216> 본 등 모

연이어 간행되었다.²³⁾ 1447년 당시 발문을 썼던 孫肇瑞는 당시의 사정을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신주무원록』을) 강원도감사 유효통에게 명하여 원주에서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하였으니, 백성을 어린이처럼 여기는 마음이 어찌 일 지극한가? 그러나 간행이 너무 먼 지방에서 이루어져 영남의 여러 군현이 이를 쉽게 얻어 보지 못하고 검험관이 그 요체를 습득하지 못하여 송사를 벌이는 백성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였으니 가히 애석한 일이었다. 이에 경주부윤²⁴⁾ 정발, 통판 박연세 등이 본부의 재력을 모아 간행하였다.²⁵⁾

두 4가지 판본이다. 먼저 ①, ②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귀중본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둘 다 1447년 경주에서 간행된 동일한 판본으로 孫肇瑞의 발문이 첨부되어 있다. <奎12120> 본이 完本이며 <奎 12382> 본은 발문의 한 장이 落張인 畧本이다. 다음 ③ <古5130-5> 본은 ‘平安監營에서 丙寅年 가을에 간행되었다’는 刊記가 적혀 있다. 그리고 1447년 경주에서 간행되었을 때 첨부된 孫肇瑞의 발문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1447년 이후의 병인년 즉 1506년 이후 간행본이다. 정확한 간행연대는 미상이다. 연대 미상의 ④ <奎26660> 본은 모두 16매의 흑백 사진으로 上卷의 ‘晝夜之分’에 해당하는 내용과 下卷의 처음 부분인 「檢覆總說」의 일부가 남아 있는 영본이다. 판본과 정확한 간행연대는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⑤ <奎2216> 본은 유일하게 初刊本 간행 시 수록되었던 최만리의 발문을 간직한 판본이다. 지질이나 인쇄 상태로 보아 초간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간본의 복각본 정도로 여겨지나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최만리의 발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3) 선조 대 간행된 『고사촬요』의 ‘八道冊版’에는 『新註無冤錄』의 원주판, 경주판, 남원판, 진주판 등이 거론되었다. 원주, 경주 이외에도 남원과 진주에서 두 차례 더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大阪富士精版印刷, 1963), 참조.

24) 『文宗實錄』 권12 문종2년 3월2일(을미), 鄭發이 慶州府尹이었음이 확인된다.

25) 『新註無冤錄』, 「重刊 跋文」

又命江原道監司俞孝通 鍔梓原州 以廣頒布 其軫念蒼生 如保赤子之慮 何其至矣 然刊版 邈在遐方 肆以嶺南諸郡未易得見 使檢官而不得領其要 訟民而不得蒙其澤 是可恨已 今 府尹鄭相國發 · 通判朴君延世間斯弊 募工鳩材 刊諸本府 不月而功訖 無官不依其例 無人 不承其惠

2. 『新註無冤錄』의 구성

『無冤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上卷은 論獄(②)과 格例(③) 부분이고 下卷은 屍體檢驗(④)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上卷의 格例가 총론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르는 각론이 하권의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대체로 『無冤錄』은 송대의 『세원록』을 발전시켜 복잡한 부분은 덜어내고 간단한 것은 보충하여 분류별로 편집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였다고 평가받는데,²⁶⁾ 格例 부분이야말로 『無冤錄』의 백미라 할 수 있다. 각종 검시의 원칙과 유의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의 경우에도 검시 방법이나 세세한 기술은 이미 宋代의 법의학 서적들을 통해 습득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검시절차, 검시보고서 양식, 상부기관으로의 보고 방식 등 刑政과 법률상의 지침 등은 『無冤錄』의 엄밀하고도 정확한 「격례」 부분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無冤錄』의 구성을 도표로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朝鮮版, 『新註無冤錄』의 경우에는 ①번처럼 조선의 학자들이 붙인 서문과 발문이 첨가되어 있으며 본문에 조선의 학자들이 붙인 주석(新註)이 본문보다 작은 활자인 細註형태로 들어가 있다.²⁷⁾

Ⅲ. 『新註無冤錄』의 檢屍 방법

1. 시체 관찰과 顏色

『無冤錄』이 법의학 지침서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내용의 대부분이 檢屍 즉

26) 楊奉琨, 앞의 글 『無冤錄校注』(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145~154면.

27) 본 글에서, 『無冤錄』 원문을 인용할 때 조선학자들의 주석은 []로 구별하였다.

시체 관찰 技術이라는 점에 놀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검시방법이 顔色의 관찰인 사실이 더 흥미로울 것이다. 20세기 서양의학의 檢屍, 즉 시체를 해부하여 死因을 분석하는 데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시체의 상태를 중시한 『無冤錄』의 검시 방법은 매우 색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 新註無冤錄卷上 | | 新註無冤錄卷下 | |
|---------|---|---------|---|
| ① | 新註無冤錄序 新註無冤錄序 新註無冤錄序 新註無冤錄目錄 | | (1) 檢覆總說 (2) 驗法 (3) 婦人 (4) 小兒屍首胞胎 (5) 勒死 (6) 自縊死 (7) 落水投河死 (8) 相毆後落水死 (9) 捧毆死 (10) 刃傷死 (11) 刺死 (12) 屍首異處 (13) 拳手足踢死 (14) 辜內病死 (15) 自割死 (16) 毒藥死 (17) 火燒死 (18) 湯潑死 (19) 病患死 (20) 凍死 (21) 餓死 (22) 杖瘡死 (23) 罪囚被勘死 (24) 驚謔死 (25) 擱死又跌死 (26) 壓死 |
| ② | 今古驗法不同 自縊字義 溺死屍首男仆女仰 檢驗用營造尺 檢屍法物銀釵假偽 中毒 辦親生血屬 食氣類之辨 張知州辨明惡逆 晝夜之分 親老無待犯徒以上罪名 婦人懷孕死屍 病死罪囚 | ④ | |
| ③ | 格例 (1) 屍帳式 (2) 屍帳例 (3) 屍帳件作被告人盡字 (4) 死無親屬許鄰佑地主坊正申官類坊正里正之類申官謂申呈於官也 (5) 正官檢屍及受理人命詞訟 (6) 受理人命詞訟及檢屍例 | | |

| | | |
|----------|--|--|
| <p>③</p> | <p>(7) 自縊免檢 (8) 開棺臨事區處 (9) 檢驗骨殖無定例 (10) 屍傷不明 (11) 檢復遲慢 (12) 檢屍不委巡檢 (13) 作耗賊殺人免檢 (14) 強盜殺傷錢主隨即合檢驗 (15) 省府立檢屍式內二項 (16) 寒暑變動 (17) 初復檢驗關文式</p> | <p>④</p> <p>(27) 馬踏死 (28) 車碾死 (29) 被人針灸當下致死 (30) 雷震死 (31) 虎咬死 (32) 酒食醉飽死 (33) 外物壓塞口鼻死 (34) 硬物隱墊死 (35) 蛇蟲傷死 (36) 男子作過死 (37) 白僵乾瘁死 (38) 虫鼠犬咬傷 (39) 死後仰臥停泊微赤黃色 (40) 壞爛死 (41) 無憑檢驗 (42) 墳內尺屋下攢殞屍 (43) 發塚</p> |
|----------|--|--|

사물의 색을 통칭하는 말인 顏色(凡物之色, 皆稱顏色)²⁸⁾의 종류에 따라 죽음의 원인을 달리 파악하였던 『無冤錄』이었기에 色에 매우 민감하였다. 실제 『無冤錄』에 표현되는 색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赤色 계통만 보아도 赤色으로부터 赤紫色·赤黑色·淡紅赤·微赤·微赤黃色·靑赤色 등 매우 여러 단계로 색이 분화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적색은 구타나 혹은 목을 맨 傷痕의 중요한 지표 색이었다. 시체가 붉은 색이라면 틀림없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刺傷의 경우에도 당연히 선홍색의 刺傷痕이 남기 때문이다.²⁹⁾ 이처럼 시체의 색은 죽

28) 『新註無冤錄』卷上(六), 「受理人命詞訟及檢屍例」.

29) 『新註無冤錄』卷下(十), 「刃傷死」.

음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靑色 계통은 질식사의 상흔이었다. 시체에 상처가 없고 오직 안색이 푸르고 매우 검으며(黚) 혹은 한 쪽이 흡사 부은 듯하면 대개 이는 다른 사람에 의해 어떤 물건으로 입과 코를 막히거나 덮어 눌러 죽임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無冤錄』의 설명이다. 일단 청색의 시반이 나타나면 질식사를 의심하고 조사를 벌였던 것이다.

독살의 경우도 시반이 푸른색을 띠었다. 果實이나 金石이 든 약을 먹고 중독되어 죽은 경우나³⁰⁾ 벌레 독에 중독되어도 그러하였다. 다만 전신이 푸른색인 경우 벌레의 독(毒)에 죽은 시체이고,³¹⁾ 푸른색이 몸의 위아래 어느 한 부위에 멍처럼 나타난 경우는 과실 혹은 金石의 독으로 사망한 것인데, 구타의 상흔과 유사하므로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색이 더 길어져서 청흑색이 되거나 혹은 온몸에 작은 포진이 발생한다면 이는 砒霜 등에 의한 중독사로 의심되었다.³²⁾

이처럼 청색은 중독사와 질식사를 의심케 하는 증거들이었다. 심지어 시체가 모두 썩어 검시할 수조차 없어도 뼈가 열은 검푸른색을 띠면 이는 중독사로 인정되었다.³³⁾ 그럼 사후에 독을 입안에 넣어 중독사로 위장한 경우는 어떠한가? 이때는 시체가 황백색을 띠므로 구별이 가능하였다.³⁴⁾

살해 후 위장한 경우는 白色의 살빛이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가령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끈이나 줄로 손발이나 목을 結縛한 경우는 이미 죽은 상태이므로 氣血이 통하지 않아 상흔이 검붉거나 붉지 아니하고 단지 흰색을 띤다는 사실이다.³⁵⁾ 생전의 상흔과 사후 상흔은 이렇게 명백히 차이가 났으므로 傷痕이 白色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이다. 물론 傷痕을 붉은 색으로 위조하는 수도 있었다. 대포창이를 불에 달구어 흰색의 상흔을 지저 상흔을 붉게 만드는 방식이다.

30) 『新註無冤錄』 卷下 (十三), 「拳手足踢死」.

31) 『新註無冤錄』 卷下 (十六), 「毒藥死」.

32) 『新註無冤錄』 卷下 (十六), 「毒藥死」.

33) 『新註無冤錄』 卷下 (十六), 「毒藥死」.

34) 『新註無冤錄』 卷下 (十六), 「毒藥死」.

35) 『新註無冤錄』 卷下 (五), 「勒死」.

이에 대해서는 상흔 부위가 건조한지 아니면 축축한지 여부로 자·타살을 확인하는 조사 방법이 강구되었다.³⁶⁾

刺傷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후에 칼날로 베어 손상을 입힌 것은 白色을 띠는 점에서 선홍색의 생전 상흔과는 구별할 수 있었으며,³⁷⁾ 시체를 사망 현장에서 옮긴 경우에도 이후에 만들어진 상흔이 모두 백색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흰색의 상흔이 여럿 발견되면 시체가 이동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시반 자체가 흰색인 경우는 凍死이거나 끓는 물에 데여 죽임을 당한 경우, 그리고 溺死한 경우들 뿐인데 이러한 사례들은 흰색의 시반 이외에 의사의 경우 몸이 부어오르거나 湯潑死의 경우 온 몸에 데인 화상 포진이 있는 등 특이한 증상들이 추가로 발견되므로 판별하기가 오히려 쉬웠다.

한편 黑色은 紫黯色, 黑黯色, 黑淤色 등으로 다양하였다. 모두 시체가 오래되어 부패한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색으로 파악되었다. 일단 검게 변한 시체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였다는 말이다. 특히 목을 매 죽은 경우 縊痕이 대개 검은 색 혹은 흐릿한 검은색(黑淤色)을 띠었고, 구타당한 상흔 역시 시간이 지나면 검푸른 색을 보이므로 중요한 物證이 되었다. 그리고 태아가 腹中에서 놀란 후 死胎가 되어 내려온 경우 胞衣가 紫黑色이 되었고 출생 후 사망한 경우 흰색을 띠었으므로 이로써 태아가 출생 전에 사망한 것인지 혹은 이후에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黃色의 경우는 病死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질병을 앓다가 사망하거나 살해된 경우, 시반이 누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病歷을 확인하도록 요구하였다. 혹 스스로 베고 죽은 시체는 입과 눈을 모두 다물고 두 손을 주먹 쥐고 있으며 살빛이 황색을 띠기도 하였지만³⁸⁾ 대개 황색의 시반은 病患死를 의심하는 안색이었다.

요컨대 『無冤錄』의 대표적인 검시 방법인 顔色の 관찰은 전통적으로 ‘色’을

36) 『新註無冤錄』卷下(五), 「勒死」.

37) 『新註無冤錄』卷下(十), 「刀傷死」.

38) 『新註無冤錄』卷下(十五), 「自割死」.

중시하는 동양의학의 지적인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다. 色은 곧 ‘氣의 發化’라는 『황제내경』의 사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사고는 五臟에 五色을 비정하는 데로 이어지면서 살아 있는 자의 신체 상태를 ‘顔色’으로써 추정했다.³⁹⁾ 뿐만 아니라 시체의 상태도 색으로 파악하였으니 동양의 身體觀에서 顔色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시체의 상태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그 안색이 매우 달라졌는데 이를 분별하는 일 또한 중요시하였다.⁴⁰⁾ 시간경과에 따른 시반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거꾸로 사망 후 경과 시간을 추궁하여 사망 일자를 추정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무원록』은 시체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썩어간다고 묘사하였다.

먼저 1단계는 얼굴부터 · 배 · 겨드랑이 · 가슴 부위의 살빛이 약간 누렇게 혹은 푸르게 변하는 과정이다. 다음 2단계는 코와 귀에서 많은 惡汁이 흘러나오고 배가 팽창하고 구더기가 나온다. 3단계는 두발이 탈락하는 과정이다.

이에 대해 『무원록』에는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봄 · 가을은 기후가 온화하여 2 · 3일이 여름의 1일에 비할 수 있고, 8 · 9일이 여름의 3 · 4일에 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매우 추울 때는 5일이 지나야 매우 더울 때 1일과 같으며 15일이 더울 때의 3일 내지 5일과 같다는 식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간과 부패 사이에 일관된 상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즉 비만한 사람과 마른 사람 그리고 병약한 자들의 경우 각각 부패하는 속도가 달랐다. 따라서 『무원록』에서는 ‘살찌고 젊은 자는 문드러지기 쉬우나, 마르고 늙은 자는 쉽게 상하지 않는다.’고 부연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기후에도 남과 북의 차이가 있고 또 山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있는 법이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시의 적절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었다.

39) Kuriyama Shigehisa, 1999 *The Expressiveness of the Body, and the Divergence of Greek and Chinese Medicine* (New York : Zone Books).

40) 『新註無冤錄』 卷上 (十六), 「寒暑變動」.

2. 偽造된 傷痕의 判別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의 검시가 顔色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안색을 위장하여 타살의 흔적을 제거하는 기술 또한 발달하였다. 따라서 상흔의 偽裝을 발각하는 방법 또한 개발될 필요가 있었다.

〈표1〉 계절별 시체 發變의 진행 일정

| 계절 \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春 | 2~3일 | 10일 | |
| 夏 | 1~2일 | 3일 | 4~5일 |
| 秋 | 2~3일 | 4~5일 | 6~7일 |
| 冬 | 4~5일 | 15일 | |
| 盛暑 | 1일 | 3~4일 | 3~4일 |

가령 他物로 구타·살해한 경우 傷痕이 푸르거나 붉은 색이 나타날 것이 틀림 없다. 그런데 만약 깃버들 나무의 껍질을 상처 부위에 덮어두면, 상흔 안이 짓무르고 상하여 검은색이 되는 등 구타 흔적을 위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으로 만져보아 부어오르지 않고 단단하지 않으면 위장의 흔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⁴¹⁾

또한 범인이나 관련자들이, 시체를 부검하는 데 참여할 件作이나 行人(검시에 참여하는 이서배들의 통칭)을 사주하여 永草⁴²⁾를 醋에 담갔다가 상처에 바르도록 하였다. 그러면 상흔이 사라졌다. 따라서 검시관은 무언가 의심스러운 부위가 발견되면 甘草 즙으로 그 부위를 닦아주어야 했다. 진짜 상처가 있었다면 즉시 나타나기 때문이다.⁴³⁾

41) 『新註無冤錄』 卷下 (九), 「棒毆死」.

42) 『增修無冤錄諺解』에는 ‘茜草’ 즉 꼭두서니과의 다년생 풀로 주석을 달았다.

43) 『新註無冤錄』 卷下 (一), 「檢覆總說」.

이밖에 칼로 살해한 후 불에 타 죽은 것으로 위장한 경우를 밝혀내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다. 검시관은 作作人으로 하여금 백골을 수습하고 재와 티끌 등을 부 채질하여 날려버린 후 원래 시체가 놓여 있던 땅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위에 매우 신 초(醋)를 뿌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만일 칼에 찔려 죽은 시체이면 피가 땅에 스며들었다가 강한 산성을 만나 핏빛이 생생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산과 단백질의 화학반응을 검시에 활용한 수사 방법으로 아마 경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이 축적되면서 그 과학성을 인정받게 된 경우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살해 후 자살한 것처럼 조작한 ‘弔縊死’가 가장 판별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죽기 전에 즉시 목을 매달고 自縊으로 위장하면 이는 매우 판별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시체의 상흔이 스스로 목을 매 죽은 自縊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無冤錄』의 ‘自縊’ 항목은 실제로 자살보다는 타살을 판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색이나 시체의 상태만으로는 자·타살을 구별하기 어려웠으므로 주변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도록 하였다.

목을 맨 장소가 목을 뺄 수 있는 높이인지 조사하고, 목을 맨 들보나 기둥 위에 自縊이라면 흔적이 어지럽게 나 있을 테지만,⁴⁴⁾ 그렇지 않다면 흔적이 가지런한지 살펴야 하며, 이밖에도 목을 매단 끈이나 줄을 막대기로 두드려보아 단단하게 탄성을 유지하면 자책이지만, 혹 끈이 느슨해지고 늘어진다면 이는 시체를 옮겨 매단 흔적이므로 잘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체를 옮긴 경우 상흔이 두 군데 이상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지시켰다.⁴⁵⁾

특히 縊死의 경우에는 죽임(음)에 사용된 끈의 매듭이 중요하였는데, 매듭이 풀어지는 活套頭와 매듭이 풀어지지 않는 死套頭를 살펴야 했다.⁴⁶⁾ 마지막으로 시체를 관찰하면서 자책의 상태인 ‘눈을 감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검험하도록 하였다. 타살의 경우라면 입과 눈을 벌린 상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⁴⁷⁾

44) 죽기 직전 몸을 요동하므로 들보 위에 끈 자국이 어지럽다는 말이다.

45) 『新註無冤錄』 卷下 (六), 「自縊死」.

46) 『新註無冤錄』 卷下 (二) 驗法, 『新註無冤錄』 卷下 (六), 「自縊死」.

47) 『新註無冤錄』 卷下 (六), 「自縊死」.

한편 상흔을 위장하지 않았다 해도 시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시일이 오래 경과된다면 시반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혹은 피부가 원래 검붉은 사람은 시반의 흔적을 잘 살필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 이 경우 활용된 것이 바로 物物들이었다.

법물은 합법적으로 검시에 활용되는 보조 도구 및 수단들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官尺이라든지 100% 순도의 은비녀 등이 있다. 이밖에도 지게미(糶)·초(醋)·과의 흰 부분·椒(茜草)·소금·매실과육 등과 蒼朮, 皂角 등의 약제도 사용되었다. 전자 가운데 지게미, 초, 파, 매실 과육 등은 시체의 조사 과정에서 사용되고, 후자인 창출, 조각의 경우는 시체가 놓인 곳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⁴⁸⁾

상처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흔적이 의심스러운 부위가 있으면, 먼저 그 부위에 물을 뿌려 적신 후에 과의 흰 뿌리(葱白)를 짓뭉어 상흔이 있는 곳에 넓게 펴 바르고 초(醋)에 담가 두었던 종이를 그 위에 덮어둔 채 한 시간여를 지난 후 이를 걷어내고 물로 씻으면 傷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⁴⁹⁾

그러나 다시 傷痕이 찾아들어 관찰이 어려우면 白梅를 찢어 짓이긴 후 보고자 하는 곳에 펴고 싸서 덮어 두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도 온전하게 보이지 아니하면 白梅의 과육을 파·山椒·소금·지게미 등과 함께 갈아 떡을 만들어 불 위에서 구어 뜨겁게 한 후 손상된 부위를 지지면 잘 드러난다고 보았다. 특히 지게미와 초는 온 몸에 두루 퍼 발라 상흔을 뚜렷하게 드러내 주는 효과를 보았으므로 반드시 검시 현장에 가져가 사용하였는데,⁵⁰⁾ 겨울철이나 초봄의 경우 초는 끓이고 지게미는 볶아서 뜨겁게 한 후 시체에 덮어주어야 상흔이 잘 드러났다.⁵¹⁾

마지막으로 위의 방법을 모두 사용해도 정확하게 상흔이 안 보이면, 지게미와 초(醋)를 사용하여 시체를 싸두었다가 오래 지난 후에 물을 세차게 뿌려 씻어내고

48) 『新註無冤錄』卷下(二), 「驗法」.

49) 『新註無冤錄』卷下(九), 「棒毆死」.

50) 『新註無冤錄』卷下(二), 「驗法」.

51) 『新註無冤錄』卷下(二), 「驗法」.

露天에 눕혀두고 새로 기름칠한 비단이나 흑 기름칠해 반투명한 우산으로 보고자 하는 곳을 가린 후 햇빛을 비추면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⁵²⁾

3. 정확하고 표준화된 검시

『無冤錄』이 법의학 책이라고 해서 내용 전체가 검시의학에만 맞추어진 것은 아니었다. 전체적인 조사과정과 집행상의 주의할 문제 등 대해서도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으니, 그 철학은 바로 정확성과 엄격함이었다.

검시 이후에 관련자들을 심문하는 일은 검시만큼이나 살인사건 조사에서 중요한 과정이었으므로 사건 관련자 그리고 그들로부터 供招를 받아내는 과정에 대해서도 엄격한 지침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검험관은 혼자 검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험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 가령 서리와 奴屬들, 그리고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증인들이나 屍親 등을 대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단 검시관으로 차정되면 가까운 관원이나 선비, 혹은 術士나 중·도사 등을 만나지 말아야 했다. 가까운 친인척을 만나거나 舊面인 자를 만나 혹 조사 과정에 공정성을 잃을까 염려한 이유이다. 혹은 術士들의 간사함과 속임수를 미리 방지하려는 배려였다.

특히 검시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行人과 吏人 등에게는 잠시라도 검시관의 곁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다짐받고 또 이를 검시관이 감독하였으니 이들이 조금이라도 뇌물에 연루될까 미리 예방하였던 것이다. 대개 무식한 자들의 供招가 아전들의 손으로부터 나오고, 이웃과 증인 가운데 혹 범인과는 친척이나 친구여서 비밀리에 뇌물을 받고 부화뇌동하는 수가 있으니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⁵³⁾

供招는 그 내용의 合一이 가장 중요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관련자들의 공초를 받는 일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無冤錄』에서는 ‘무릇 사건을 조사하고 심

52) 『新註無冤錄』 卷下 (二), 「驗法」.

53) 『新註無冤錄』 卷下 (一), 「檢覆總說」.

문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이웃과 목격자들을 불러 모으고 반복 심문하여 한가지로 내용이 모아져야 그 진술이 통일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혹 보고 들은 것이 차이가 있으면 각각 관련자들의 招辭를 받아 일치시켜야 한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자의 공초도 받아 보고하는데, 혹 조금이라고 차이가 있으면 재차 供招하여 사건에 대한 진술 내용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했다.⁵⁴⁾

한편 『無冤錄』은 살인사건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정확하고 엄밀한 용어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우선 정확하게 검사를 했다하더라도 이를 더욱 정밀하고 객관적인 용어로 표현하려는 의지의 결과였다.

『今古驗法不同』에 의하면, 法理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하므로 고대의 법이 오늘날에 모두 적절한 것은 아니므로 비판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어 법률적 용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논하고, ‘他物에 의한 상해’를 예로 들어 과연 他物의 법률적 정의는 무엇인지 문제 삼았다. 그리고 『無冤錄』의 저자는, 手足이 아니라면 모두 他物로 정의하였던 『세원록』의 평가를 비판하면서 물어뜯는 경우나 혹은 신발 등을 신고 발로 찬 경우 이를 他物로 볼 수 있는지 과연 타물의 엄밀한 정의는 무엇인지 推究하였다.⁵⁵⁾

결론적으로 『無冤錄』에서 타물은 ‘手足인 아닌 그리고 칼날이 아닌 기타’로 정의되었다. 심지어 兵器라도 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타물에 의한 상해였다. 따라서 구타 傷害에 소용된 흉기로는 크게 ① 手·足, ② 刃勿(날이 있는 물건) 그리고 ③ 他物로 구별되었다. 물론 타물에는 鐵鞭과 鐵尺, 도끼머리⁵⁶⁾, (칼날이 아닌) 갈등, 흥두깨, 몽둥이, 말채찍, 장작, 벽돌, 돌, 기와, 굵은 베로 만든 신, 베를 바닥에 기워 만든 신, 가죽신, 짚신 등 가장 넓은 종류의 물건들이 해당되었고 이에 의한 상해만을 ‘他物傷害’로 정의한 것이다.⁵⁷⁾

정확한 용어 사용의 정신은 『自縊字義』에서도 이어진다. 自縊이란 ‘스스로 목

54) 『新註無冤錄』卷下(一), 「檢覆總說」.

55) 『新註無冤錄』卷上, 「今古驗法不同」.

56) 도끼 날은 刃物이다.

57) 『新註無冤錄』卷下(九), 「棒毆死」.

을 맨 경우'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죽기 전에 매달아 살해하고는 스스로 목을 맨(自縊) 것처럼 위장한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단지 '自縊'이라고 표현한다면 오해를 살 염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남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뜻의 '弔縊'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⁵⁸⁾ 中毒이라는 용어 또한 마찬가지이다. 中毒은 반드시 남에 의해 살해된 경우 즉 독을 맞은(中) 경우에만 사용해야하고 스스로 독을 먹고 죽은 경우라면 '服毒致死'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⁵⁹⁾

이는 검시과정에 관련된 피의자들을 법률적으로 호칭하는데도 적용되었다. 예를 들면 '아직 正犯으로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에 이를 行凶人, 혹은 犯人 등으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被執人'이라는 용어를 임시로 사용한 것이다.⁶⁰⁾ 이는 죽은 사망자의 친·인척을 의미하는 屍親, 血屬, 苦主 등의 용어, 그리고 鄰佑(切隣), 干證, 干連, 捉事人, 涉疑人, 元告人, 行兇人 등의 용어를 정의하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엄밀함과 정확성을 기하려는 정신은 용어 뿐 아니라 검안 문서의 서술에서도 관철되었다. 가령 '피부가 파손되었는데 피가 나오지 않는다(不得作皮破血不出)'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무릇 피부가 파손되면 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부가 약간만 손상되어 피는 나오지 않았다(皮微損, 血不出)'고 기록해야 정확하다는 것이다.⁶¹⁾

『無冤錄』이 강조하는 정확한 용어 및 서술의 정신은 이를 활용하려는 조선의 학자들에게도 정확한 번역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해의 과정에서 조선전기의 법의학 지식 혹은 行刑 上의 절차 등이 완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無冤錄』에 두루 사용되었던 시체의 친인척을 표현하는 용어인 血屬, 屍親, 苦主 가운데 조선학자들은 '屍親'이라는 용어를 선택하

58) 『新註無冤錄』 卷上, 「自縊字義」.

59) 『新註無冤錄』 卷上, 「中毒」.

60) 『新註無冤錄』 卷下 (一), 「檢覆總說」.

行兇人, 虛實未定者, 不得已就被執人項下書填(項下, 謂名項下也. 被執人, 謂被捉人也. 行兇虛實未定, 故姑於被執人項下書名), 其確然是實者, 須令書押於行兇人字下

61) 『新註無冤錄』 卷下 (九), 「棒毆死」.

고 血屬은 宋의 용어이고, 屍親과 冢主는 元의 용어인데 冢主의 의미가 시친보다 부정확하므로 ‘屍親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의 주석을 달아 두었다.⁶²⁾

검시과정 및 결과의 정확성, 그리고 報告 文狀 안의 엄밀한 용어사용과 검시관의 신중한 조사 태도만으로도 부족한 무엇이 있었으나, 바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法物 사용이었다. 무엇보다도 검시에 사용하는 尺度를 통일하고 法物의 純度を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검시 측량에 주로 활용되던 營造尺을 금지하고 그 대신 표준척도인 官尺을 만들어 보급 사용케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⁶³⁾ 또한 中毒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은비녀의 경우에도 誤判을 막기 위하여 100% 순은 제품을 정부의 감독 하에 제조·비치하였다가 오로지 검시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⁶⁴⁾

시간 측정 또한 중요하였다. 검시 문장에 去年·今年·前月·今月·當日·此日 등의 불명확한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낮의 漏水(누각(물 시계)에 사용되는 물)가 다하면 밤이 되고 밤의 漏水가 다하면 낮이 되며, 하루도 당일 밤 子時 正刻 이전이 今日이고, 자시 정각 이후는 다음날이다. 이것이 晝·夜와 時·刻을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천문학 지식을 동원하여, ‘밤에 남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표현에 정확한 법률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낮의 漏水가 다한 후에 남의 집에 들었으면 이를 밤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를 위해서 시계 장치들이 확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었다.⁶⁵⁾

62) 『新註無冤錄』 卷下(四), 「死無親屬許鄰佑地主坊正申官」.

63) 『新註無冤錄』 卷上, 「檢驗用營造尺」.

64) 『新註無冤錄』 卷上, 「檢屍法物銀釵假偽」.

65) 『新註無冤錄』 卷上, 「晝夜之分」.

IV. 현장 검시 절차와 보고 과정

1. 현장검시 절차

앞에서 주로 검시 기술과 보고 문장의 엄격함에 대해서 논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조선전기에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 살인사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無冤錄』이 조선전기의 行刑 실정에 미친 영향력은 큰 것이었지만, 특히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어떻게 검시할 것인지 그 후 어떤 절차를 밟아 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 지침’이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조선시대에 검시는 바로 20세기 초 근대적 검시와 형법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新註無冤錄』과 이를 수정 보완한 조선후기 『增修無冤錄(諺解)』의 지침을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無冤錄』에 따르면, 일련의 검시 과정은 「初復檢驗關文式」이라는 공문서식에 기초하여 이루어 졌다. 「관문식」은 元代 검시 제도가 이룩한 성과 중 하나로 그 동안 복잡했던 검시보고 양식을 통합 정리한 의의가 있었다. 조선초기의 검시과정 역시 이 「관문식」에 의거하였으니 다음과 같은 몇 단계를 거쳐 조사가 이루어졌다.⁶⁶⁾

먼저 최초의 단계는 사건을 접수하여(혹은 差定의 命을 받고) 출발하는 과정이다. 출발일시, 함께 검험하는 서리와 오작인의 성명, 시체가 놓여 있는 장소, 거리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했다.

① 직함을 갖추고 某年 某月 某時에 某處의 공문 내용에 의거하여 검시한다. 즉시 위 공문에 따라 수령관 아무개는 司吏 아무개 · 作作 아무개 등을 인솔해 길을 출발하여 모일 모시에 某都⁶⁷⁾ 某里 이른바 某所라 불리는 시체가 놓여진 곳에 도착한다.

66) 이하 현장 검시 절차는 「初復檢驗關文式」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新註無冤錄』(十七), 「初復檢驗關文式」 참조).

67) 사람들이 모여 사는 취락지를 都라고 보았다(『新註無冤錄』의 細註 참조)

두 번째는 시체가 놓인 마을에 도착하여 사건 관련자들을 마을의 主首와 里正 등으로 하여금 모두 소집하도록 하는 일이다. 屍親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하지만 시친의 출현을 기다리다가 시체가 부패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이럴 경우 현장에 참석한 여러 증인들을 상대로 시친의 부재를 증명하는 다짐을 받아두어야 했다.

② 마을의 主首나 里正 아무개로 하여금 이웃 아무개· 屍親 아무개, 혹 醫工 아무개, 行凶人 아무개와 證驗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으도록 한다(本註 : 만일 屍親이 없으면, 시친이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고, 검험에 참여한 증인 수 명에게 각각 다짐을 받는다. 시친이 某處에 거주하므로 혹 사람을 시켜 召喚하였으나 오지 않았다면 제외시키는데, 즉 오지 않은 증인들은 제외하는 것이다. 만일 시친이 검험에 오기를 기다리다 시체가 부패하여 變貌할까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여러 사람들의 입회 하에 검시관이 검험을 손수 지휘하고, 屍帳式에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다.

③ 해당 首領官이 친히 件作 아무개를 감시하고, 대중의 입회하에 함께 살피는데, 법례에 따라 범물을 사용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뒤집어가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고 분명하게 검험하여, 아무개의 시체임을 조사하고 사망원인을 결정한 후 곧 바로 上司에서 보내 온 「屍帳」 위에 하나씩 대조해 가며 모두 기록한다.

한편 시체의 검시는 먼저 현장 묘사(④)를 하고 뒤이어 시체 상태를 묘사(④-1)하는 것이 정해진 순서였다.

④ (시체가) 목을 매었는지 혹 침상 위나 地上에 누웠는지 살피고 혹 머리는 남쪽으로 발은 북쪽으로 했는지, 머리를 동쪽으로 발을 서쪽으로 했는지, 얼굴을 위로 향했는지 엎어졌는지 옆으로 누웠는지 살핀 후 시체 주변의 동서남북 사방을

모두 기록한다. 이를테면 문이나 창문, 벽이나 담장이 있으면 각각 거리가 몇 보(步) 혹은 몇 촌(寸)인지 기록한다.

물론 縊死, 溺死 등 시체의 상태와 주위 환경에 맞추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시체가 놓인 상황과 주변을 먼저 조사한 후 본격적인 시체의 관찰에 들어가는데 앞면부터 검험하였다. 조사할 항목은 대개 나이, 신장, 살색, 머리 상태(상투를 포함), 傷痕, 行凶 방법 그리고 원래부터 몸에 있는 문신이나 흉터, 혹은 땀을 놓은 자국이나 신분을 알 수 있는 號牌 등을 조사하였다.

④ - 1 시체의 앞면을 검험한다. 시체의 나이가 대략 얼마인지는 시친 아무개가 죽은 자의 나이가 몇 인지 말한 바에 따른다. 신장이 대략 몇 尺寸인지 측량하고 얼굴과 신체의 살빛이 어떤지, 脂肉이 꺼졌는지 아닌지, 양손과 다리가 곧게 뻗었는지 아니면 굽었는지, 정수리와 머리 부분의 상투가 단단한지 풀어졌는지 혹은 완전히 풀어졌는지, 상투를 풀어 상투를 묶은 줄이 있는지 살핀다. 만일 있다면 길이가 얼마인지 말한다. 상투의 길이가 얼마인지 측량하고 …(중략)… 머리카락의 길이가 얼마인지 측량한다. …(중략)… 만일 상처가 있다면 어디에 상처 한 곳이 있다고 지정한다. 피부가 벗겨져 出血하거나 혹 청적색이거나 혹 부어오른 경우인지, 혹 부어올라 피부가 벗겨진 경우인지, 혹 뼈가 부러졌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상흔의 길이 · 너비 · 깊고 얇음 · 주변이 푸르고 붉은지 · 부어오른 높이가 몇寸인지 측량한다. 또한 手足에 의한 것인지 혹은 他物에 의한 것인지 혹은 마찰하거나 隱墊(은점이란 밑에 있는 물건이 위에 있는 물건에 부딪혀 생긴 상처이다)인지 살핀다.

만일 문신이 있으면 신체의 某處에 새겨 넣은 문신이 있으며, 자라나 물고기 모양인지, 仙人이나 小兒 혹은 草花 종류인지 말한다. 刺號 유무를 살피고 그 大小와 글자 모양, 그리고 줄 수를 살핀다. …(중략)… 號牌 종류가 있으면 각각 상세하게 기록하여 보고한다.

모든 항목을 서술하고 또 시체의 상태를 屍帳에 기록한 후에는 조사가 확실하다는 다짐을 받아두고 검시 결과에 따라 사인을 결정하였다.

⑤ (조사를) 마친 후에는 作作 아무개가 검험을 증감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하거나 輕重을 조작하지 않았음을 거듭 다짐받아 文狀에 기록하고, 아울러 시친 아무개, 이웃 아무개, 里正 아무개, 主首 아무개, 혹은 범인 아무개, 醫工 아무개 및 證驗에 참여한 모든 이들로 하여금 각각 검험 내용을 증명한다는 다짐을 받아 검안에 적는다. 이에 근거하여 아무개의 시체가 치명한 원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어떻게 사망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낸다.

이제 검시의 마지막 단계이다. 작성한 시장 가운데 1부를 屍親에게 준 후 覆檢(복검의 경우는 그 이상의 조사)에 대비하여 里正 등에게 시체를 守直하도록 명령하고 다음 복검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⑥ 屍帳 한 부를 시친 아무개에게 내어주어 보관하도록 하고, 시체를 거적으로 덮은 후 주위에 灰를 뿌려 봉하고 踏印을 여러 개 하여 표시하며, 里正 아무개 등으로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유념하여 看守하여 벌레나 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책임 지운다. 사람을 보내 참고해야 할 干連 여러 명을 압송하고 복검관에게 關文을 발송한다.

覆檢의 경우에도 앞의 순서대로 검험한다. 끝마친 후 별다른 논쟁이 없으면 바야흐로 시체를 친숙하게 주고 親屬이 없으면 그 마을에 맡겨 매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검험은 완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爭論이 있는 경우라면 절대로 시체를 내주어서는 안되고 곧 구덩이를 하나 파서 거적 등으로 시체를 담아 구덩이 안에 安置하고 그 위를 문짝 등으로 덮고 흙으로 봉토를 만들어 둔 후⁶⁸⁾ 재조사에 대비하였다.

68) 『新註無冤錄』卷下(二), 「驗法」.

이상이 『新註無冤錄』에 기초하여 재구성해 본 조선초기의 검시 절차이다. 사건 접수→출동→현장묘사→시체묘사→검시 참여인들의 다짐→屍帳작성 및 死體 看守(→覆檢)의 과정을 밟았던 것이다. 현장과 시체에 대한 묘사야말로 사건 조사의 핵심사항이었다. 따라서 上府에서는 ‘屍帳’이라는 공문서를 사건 현장에 下送하고 여기에 검시관이 일일이 대조 기록하여 回申토록 규정함으로써 조사과정 상의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실질적인 검시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문서가 바로 ‘屍帳’이었다.

2. 「檢屍狀式」의 활용

세종대에는 『新註無冤錄』의 간행과 함께 주목해야 할 문서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屍帳 즉 「檢屍狀式」이다. 1439년 2월 세종은 한성부에 명하여 「檢屍狀式」을 간행하게 하고, 또 각도 관찰사와 제주 안무사에게 전지하여 板을 새겨서 인쇄하여 도내 각 고을에 비치하게 하였다.⁶⁹⁾ 그런데 「檢屍狀式」의 인쇄와 배포의 어명이 내려진 시점은 바로 『新註無冤錄』이 탈고되어 강원도에서 간행을 준비하던 1439년 봄이라는 사실이다.

도대체 『新註無冤錄』의 간행 도중에 곧바로 「검시장식」을 인쇄하여 배포하도록 주문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만리가 쓴 『新註無冤錄』 발문에는 「검시장식」의 내용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다. ‘세종께서 깊이 원통한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시고 문신들에게 명하여 古註無冤錄을 가지고 자세하게 훈석을 가하고, 다시 檢屍格例와 屍狀式을 추출하여 별도의 표로 간행하였다’는 것이다.⁷⁰⁾ ‘별도의 표’는 바로 「검시장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시장식」의 주 내용은 『無冤錄』의 ‘檢屍格例’

69) 『世宗實錄』 권84 세종21년 2월 6일(을묘).

70) 『新註無冤錄』, 「跋文」.

我殿下深念于茲爰命文臣等 將古註無冤錄 更詳訓釋 又抽出檢屍格例與狀式 別爲二表 然後開卷瞭然.

와 ‘屍狀式’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 형식은 ‘表’였다.⁷¹⁾

『新註無冤錄』과 별도로 만들어진 「검시장식」이 단지 간단한 표였다면 그 내용과 활용법은 무엇이었을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검이던 복검이던 한번 시체를 조사하기위해 출동한 검시관이 기록할 검시 내용을 한 장의 종이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공문서, 즉 屍帳이었던 것이다.

『無冤錄』이 종합 검시 참고서라면 「檢(屍狀)式」은 현장에서 작성하는 문건이었다. 『無冤錄』이라는 지침서를 『新註無冤錄』으로 간행하였다면 元의 「檢屍法式」(이후 『無冤錄』 屍帳式의 모태가 되었던)에 해당하는 문서도 따로 인쇄하여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1439년 별도로 인쇄되었던 「檢屍狀式」 즉 조선의 屍帳式이었다. 이후 형조에서는 「검시장식」을 인쇄하여 한성부와 5부 등에 나누어 비치하게 해, 인명사건이 발생하면 검시장식 인쇄면에 검험 사항을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했다.⁷²⁾

조선전기에서 사용되었을 屍帳은 『新註無冤錄』안에 포함되어 있던 표를 따로 인쇄하여 사건 현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無冤錄』의 기록을 통해 그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시장식」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⁷³⁾

첫째,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도착한 시간 그리고 시체의 치명 원인을 간단히 요약하는 난이다.

71) 『無冤錄』의 屍帳式은 元의 「檢屍法式」, 즉 1304년 간행된 『元典章』 刑部 권5에 들어 있는 圖板 형식의 표를 저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元 이전에 많이 활용되던 檢屍圖形 들 가령 「檢屍格目」, 「檢狀」, 「檢驗正背人形圖」 등 기왕의 검시 문건들을 간단한 하나의 ‘표’로 통합하여 활용도를 提高한 점에 의의가 있었다. 賈靜濤, 『中國古代法醫學史』(群衆出版社, 1984), 95~100면 참조.

72) 『世宗實錄』 권112 세종28년 5월 15일(임오) : 1446년 형조에서, 檢屍狀式을 本曹로 하여금 刊板하여 字號를 印出하고 踏印을 시행하여, 漢城府와 各部에 나누어 보내어 명백하게 置簿하고, 5部에서 초검한 뒤에 檢屍狀을 곧 형조에 보고하고, 또 한성부가 復檢하여 市場을 형조에 옮기면, 詳覆司에서 초검·복검 안의 같고 다른 것을 專掌하여 상고해서 시행하게 하자고 하므로 따랐다.

73) 이하 시장식의 설명은 『新註無冤錄』 卷上の 「屍帳式」을 참고하였다.

某路, 某州, 某縣, 某處에, 某年, 某月, 某日, 某時에 검험하기 위해 某人的 시체가 놓인 곳에 도착하였다. 某字 제 몇 號 檢안에 각 항목마다 모두 적어 넣고, 생전에 치명환 원인을 결정하여 뒤에 기록한 후 勸合⁷⁴⁾한다.

둘째, 시체의 앞·뒷면 상태를 자세하게 기술하는 난으로 신체의 여러 부위를 나열한다. 앞면(仰面)은 머리 꼭대기인 百會 즉 頂心에서부터 시작하여 머리 좌우, 顙門 그리고 이마로 내려와 額角, 양 태양혈 등으로 頭部 그리고 얼굴부위에서 차례로 아래로 향하여 그 상태를 적을 수 있도록 空欄으로 준비되었다. 다음 뒷면(合面)은 腦後, 髮際 등 머리 뒤부터 귀, 목 부위를 지나 어깨 손, 손가락 그리고 다시 척추를 따라 내려가면 엉덩이, 다리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앞·뒷면을 합쳐 70여 항목에 해당하는 신체의 부위를 묘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세째, 검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과 다짐을 받아든 후 검험에 참여한 사람들과 검시관의 명단을 적고 수결하는 난이다.

대중을 상대로 검험하여 아무개의 죽음의 원인을 결정한다.⁷⁵⁾ 검험시 관련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 정범(正犯) 아무개
- 간범(干犯) 아무개
- 간증(干證) 아무개
- 지린인(地鄰人) 아무개
- 주수(主首) 아무개⁷⁶⁾
- 시친(屍親) 아무개
- 오작·항인(件作行人) 아무개

74) 조선 시대에, 문서의 한끝을 원본에 겹쳐 대고 그 위에 도장을 찍던 일. 또는 그 도장. 각 관서에서 발부한 공문서의 진위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였다.

75) 『新註無冤錄』 卷上, 「屍帳式」.

76) 『宋元檢驗三線』에는 ‘主首 某’ 아래에 ‘里·坊正某’ 항목이 더 있다.

앞서 언급한 致命 원인들 가운데 만일 脫漏하거나 실상이 아니거나 서로 짜고 날조하거나, 시체의 상처 부위를 늘리거나 혹 줄인 일이 있다면, 검시관과 胥吏들은 죄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을 보증하고 다짐을 받는다.

某年 某月 某日, 司吏 아무개 押(수결)

首領官 아무개 押

檢屍官 아무개 押

이상이 조선전기에 사건 현장에서 작성된 屍帳의 구성 및 내용이다. 이를 3부 작성하여 1부를 시친에게 주고 나머지 1부는 上府에 보고하고, 1부는 검시관이 보관하였다.

3. 檢屍 후 보고 절차

작성된 검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 上府로 보고 되었을까? 조선전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폐단들 가운데, 서울과 지방의 초·복검 절차 및 규칙이 확립되지 않았던 문제들은 『新註無冤錄』상의 검시절차에 따라 교정되었을 것이다.

일찍이 『無冤錄』에는 검시 관리들의 태만과 엄밀하지 못한 조사과정을 비판하고 있었다. 비판의 요지는 人命 사건의 조사는 엄밀해야 하는데 초검관, 복검관, 本處官司, 路(총관부)에서 각각 검안을 받고서도 범상히 보아 넘기고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후 『無冤錄』에는 구체적인 검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시체를 검험할 때 本處의 백성을 다스리는 長官에게 맡겨 즉시 典史와 아울러 刑獄에 능숙한 實職 서리 그리고 信實하고 오래되어 능란한 仵作과 行人들을 대동하여 거리의 遠近을 마다않고 시체가 놓인 곳에 나아가서 屍親과 이웃(鄰佑)·主首人 등을 불러 모아놓고 친히 검시를 감독할 것이다. 仵作과 行人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입회하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검험하고 전신 상하의 손상

처를 살피고 치명한 원인을 결정하며, 오작항인들로부터 거둬 다짐을 받고 아울러 누락과 不實함이 없음을 문서로 받아둔다.’⁷⁷⁾ 즉 사건 해당 지역의 長官이 초검관이 된다는 말이다.

다음 ‘復檢官과 書吏들도 위의 검험에 따라 오작·항인의 다짐을 받는 문장을 받고 초검 官司에 回報한다. …(중략)… 만일 檢屍官으로 차정된 공문을 받게 되면 검험해야 할 시체의 손상처를 잘 살펴 사실을 밝히고, 行凶한 자와 의심스러운 자를 체포하여 자세하게 심문할 것이다.’⁷⁸⁾ 만일 살인하고 물건을 훔친 것이 분명하고 확실히 증거가 드러나더라도 범인을 잡아 추궁하여 자백을 받고 계속 조사하여 완벽하게 준비한 후, 가족들의 상대로 원통함이 없는지 審問한 후 總管府에 보고한다.⁷⁹⁾ 그러면 총관부의 經歷·知事·司吏 등은 보내온 문서를 자세하게 살피고 참작하여 중간에 억울함이 없는지 살피고 또한 의심이 가는 경우가 없는지 조사한다. 그리고 총관부에서 먼저 억울함이 없는지 조사한 후에 다시금 공초하여 사정을 자백 받는다. 총관부 관리들이 公堂에 앉아, 囚人들을 데려오도록 한 후 직접 家屬들을 面對하여 供招받은 罪狀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읽어 보인 후 재삼 審問하여 冤抑이 없도록 한다. 본인의 자백을 받은 후 家屬들이 이에 복종하면 結案하여 모두 기록한 후 刑部에⁸⁰⁾ 回申한다.’⁸¹⁾

이상의 『無冤錄』의 규정을 좇아 조선전기에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 즉 本處의 長官 즉 해당 郡·縣의 수령이 초검을 하고, 이어 관문을 보내어 인근 군현의 수령에게 복검을 부탁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사건의 結案은 해당 道에 올려 보내진다. 道에서는 다시 이를 잘 살핀 후 刑曹에 보고하였고, 마지막으로 刑曹에서 자세히

77) 이하 검사이후 보고 절차는 『新註無冤錄』 格例(五) 「正官檢屍及受理人命詞訟」 항목 참조.

78) 『新註無冤錄』 格例(五), 「正官檢屍及受理人命詞訟」.

79) 『新註無冤錄』 格例(五), 「正官檢屍及受理人命詞訟」.

80) 刑部에 회신하는 절차는 검시의 폐단을 지적하는 앞부분에 나온다.

『新註無冤錄』 格例(五), 「正官檢屍及受理人命詞訟」

總管府官吏看同泛常[看同泛常, 謂視之如泛然常事也], 又不子細照詳所申中間有無冤抑[言, 雖見所申, 不詳察其冤抑之有無也], 止依元招, 取訖招伏[取訖招伏, 謂取了招伏也], 結案申部[部, 卽刑部也], 由此致有冤抑.

81) 『新註無冤錄』 格例(五), 「正官檢屍及受理人命詞訟」.

推審한 후,⁸²⁾ 왕의 최종적인 裁可를 받아 처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른바 인명 사건의 경우 신중하게 처리하는 차원에서 三覆의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⁸³⁾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新註無冤錄』은 조선 초기에 간행되어 영·정조대에 이르기까지 조선 법의학의 기본 지침서로 활용되었다. 오랫동안 법의학 지침서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검시의 구체적인 절차, 검시과정의 엄밀성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한 행정절차 상의 규식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사망한 시체의 검시방법을 당시까지 축적된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설명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특히 『新註無冤錄』에서 마련한 행정상의 규식이 조선후기까지 거의 변함없이 준수되었다는 사실⁸⁴⁾과 『新註無冤錄』의 과학적인 법의학 지식에 대해서 조선후

82) 형조의 詳覆司는 死罪를 상세히 覆審하는 사무를 담당하였다(『經國大典』, 「刑典」 참조).

83) 살인사건의 경우 범인으로 확정되면 사형에 처해지므로 三覆의 심사과정을 거쳤다. 고려에 이어 조선초기에도 시행되었는바, 1392년(태조 즉위) 윤12월 형조에서 三覆制를 시행할 것으로 상언한 내용이 『태조실록』에 전하고, 1397년(태조6) 최초의 법전인 『經濟六典』, 「刑典」에도 立法化되어 있다. 이후 『經國大典』 조항에도 三覆制가 실리면서 조선후기까지 계속되었다. 삼복의 절차는 『經濟六典』의 경우 처음 수령이 심리하고 도 관찰사를 거쳐 都評議使司가 심리하고 이를 왕에게 알렸다가, 『經國大典』에서는 군현의 수령으로부터 도 관찰사, 그리고 형조의 詳覆司를 거쳐 왕에게 啓聞하였다.

84) 『增修無冤錄諺解』의 「關文式」과 동일하다.

具銜호고 某年月日時에 準某人牒訴호야 卽引司吏某人作某人等호야 起程前去호야 至某日時에 到某縣某里地名某色人屍首停置處호야 呼集合參人等호야 當職이 躬親監視호디 對衆眼同호야 依例用法物호야 自上至下히 翻轉호야 一一仔細分明定驗得호야 就於屍帳上에 遂一比對호야 標寫호고 取件作某人的 並無增減不實移易輕重이라 호는 甘結文狀호고 並責屍親某人行凶某人及應參檢人等の 各各證驗執結文狀호고 定驗得某人屍首致命根因이 委係端的호고 將屍首호야 遮蓋灰封호고 黃里正等用心看管호야 無致虫鼠傷殘호고 合參檢人等を 差人管領호고 移關覆檢官云云이라 호라.

기까지 별다른 異見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新註無冤錄』의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비록 『無冤錄』 자체는 중국에서 간행되었으나 이를 도입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주석본을 만들었으며, 또 이후에 이를 엄격하게 지키고 사용했다는 사실은 수준 높은 조선의 법정신을 가늠케 해준다. 엄격한 사건 조사 및 투명한 법집행으로부터 어진 정치가 가능하다는 정신이야말로 『新註無冤錄』 간행의 기본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The Publication of the
《Shinju-Muwonrok(新註無冤錄)》(The Newly
Annotated Edition of the 《Wuyuanlu(無冤錄)》)
during the early 15th Century, and the Autopsy
Procedures at the time

Kim Ho*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Chosun dynasty, the autopsy procedures were being criticized for several procedural problems. First, the officials in charge of the autopsies and the murder-case investigations were not conducting fully extensive surveys of the case, and most importantly were not doing them by themselves. Secondly, defined procedures were not being abided by. And thirdly, the accused were not being found guilty by thorough investigations involving scientific research and necessary interrogations but merely by confessions forced by unfair torture.

Improved autopsy procedures and methods of the murder-cases had been already introduced to the Chosun peninsula through the <Wuyuanlu(無冤錄)> Manual, which was published in and imported from China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Koryo and Chosun dynasties. But in the early days of introduction this manual was not yet that popular, because the nature of contents of the manual was too detailed and technical

* Researcher, Archiv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the Chosun officials to fully understand. And forms of the official documents which would be used in autopsy sessions were not ready either.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the King ordered a published version of the <Wuyuanlu(無冤錄)> equipped with annotations which would help the readers to understand the methods and concepts introduced in it. Hence, the <Shinju-Muweonrok(新註無冤錄)> was completed by Choi-Chi-Wun in 1438, and made its service debut in 1439 as an autopsy manual after the manuals were published in the Gangweon-do area. In that same year King Sejong also ordered the official document forms(named 'Geomshi-Jangshik'/檢屍狀式-Autopsy Reports Forms) to be created and published, and also widely issued. <Shinju-Muweonrok> was an autopsy manual, while the 'Geomshi-Jangshik' was an official form for documents which will be filled by the investigating personnels with the result data of the autopsies, performed through procedures dictated by the <Wuyuanlu> Manual.

The <Shinju-Muweonrok> also included the 'Chobokgeomheom Gwanmunshik(初復檢驗關文式)' section, which contained regulations dictating the reporting procedures for the related personnels of the autopsy results(not only the results but also the entire progress of the autopsies). These procedures dictated in the 'Gwanmunshik' section were mainly developed by the Chinese investigators of the Yuan dynasty, and the autopsy reports of the early days of the Chosun dynasty were also based on these 'Gwanmunshik' regulations. These regulations vividly show us the general procedure of an autopsy at the time, which was composed of 3 steps.

The first step was to embark on the mission. The time they departed, the names of the Seoni(書吏) and Ojagin(件作人) personnels who will join the autopsy session, the place where the body is reported to be placed(or found), the distance between the place of the body and the place where the autopsy team had departed, were all recorded. After they arrived at the place of the body, the second step was to summon all the people involved in the case to report to the community leaders(the Jusu(主首) and Rijong(里正) figures) for

identification(of the people). Autopsy would be conducted in the presence of these people, and they would be required to sign the 'Geomshi Jangshik' forms after the status of the body were all fully recorded in details in that form. And finally, the third step was to determine the cause of death based on the autopsy results. After that the body would be handed over to the Shichin(屍親)'s custody. The body would be strictly guarded by the Rijong figures for other rounds of additional autopsies, and detailed information of the involved persons' will all be released to the next investigator.

<Shinju-Muweonrok> was published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Chosun dynasty, and until the reigns of Kings Yeongjo and Jeongjo this manual was used as a primary autopsy manual representing the Chosun dynasty's status in the area of medical jurisprudence. Detailed procedures of the autopsies, the required level of thoroughness, things should be noted, administrative obligations and even identification methods for various death-causes were all in there. The 'Gwanmunshik' regulations were also maintained without any major modifications, until the later days of the dynasty.